

충청북도고등학교선발고사추첨배정입학제도적용지역의
학군설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교육감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1993년 12월 13일

○ 회부일자 : 1993년 12월 13일

3. 폐지이유

조례로 제정시행토록 되었던 고등학교 선발고사 추첨배정 입학제도 적용 지역의 학군 설정에 관한 사항을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고시하도록 교육법시행령(대통령령 제14004호, 93. 11. 13)이 개정됨으로써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4. 주요골자

○ 교육법시행령 제112조의 8 (후기고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) 제2항

5. 검토 의견

충청북도 고등학교 선발고사 추첨배정 입학제도 적용지역의 학군 설정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검토한바, 본 폐지조례안은 고등학교 선발고사 추첨배정 입학제도 적용지역의 학군 설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교육법시행령 (대통령령 제 14004호, 1993. 11. 13)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 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이고, 한편 당해 조례의 부칙에서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의 경과로 폐지하게 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, 폐지조례안의 제명을 ○○○조례폐지조례안으로 하고, 안 본문에 ○○○조례는 폐지한다고 규정하는 등 일반적인 요건을 제대로 갖추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6. 폐지조례안 및 참고자료 : 별첨